

의안번호	2218898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6. 6. 22.
추계번호	26C2608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3(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으로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함(제1항)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2조제4항제8호의 업무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(제2항) ※ 안 제12조제4항제8호 제14조의3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적응, 학습 지원, 상담 및 서비스 연계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3(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 적용(안 제14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해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,¹⁾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및

1) 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호·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호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한 센터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침상으로 외국인 자녀와 유학생 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,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확대되는 사업규모 및 예산 반영 금액 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－ 가족센터 외국인(유학생) 자녀 지원 현황: 연평균 실인원 기준 2,263명
 - ('22년) 2,630명, ('23년) 2,896명, ('24년) 1,977명), ('25년) 1,916명
 - － 참고로,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현황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성·연령	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	내국인				외국인 계
			계	귀화·인지	이민자2세	기타	
인구	계	738,079	366,502	21,499	331,649	13,354	371,577
	0~4세	101,374	70,792	1,323	67,244	2,225	30,582
	5~9세	120,529	87,765	5,178	79,430	3,157	32,764
	10~14세	122,516	97,249	5,835	88,090	3,324	25,267
	15~19세	130,943	74,976	5,413	67,029	2,534	55,967
	20~24세	262,717	35,720	3,750	29,856	2,114	226,997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주: 국가데이터 이주배경인구통계('25.12월 발표, '24.11.1. 기준 작성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·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,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·청소년 보호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